

제18798호 2016. 7. 8.(금)

【총 리 령】

○총리령제1299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4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567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미래창조과학부령제74호(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4

○행정자치부령제7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

○보건복지부령제417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0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5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45

○법무부고시제2016-211호(국적회복) 45

○법무부고시제2016-212호(귀화허가) 46

○법무부고시제2016-213호(국적이탈) 5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4호(2016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5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4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59

○환경부고시제2016-130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59

○환경부고시제2016-131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1

○환경부고시제2016-134호(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6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4호(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증정정) 6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국적상실)..... 6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국적상실)..... 65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3호(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6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5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6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6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7호(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지정<변경>) 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3호(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69

(이면 계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하천점용 허가).....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8호(하천점용 허가).....	7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1호(시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7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73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2호(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4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7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6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7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외교부공고제2016-63호(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7호(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1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4호(신기술지정 신청).....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5호(신기술지정 신청).....	8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22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4호(재산등록사항 공개)	8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3호(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133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5호(공시송달)	13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0호(공시송달).....	13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2호(공시송달).....	13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공시송달).....	13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공시송달).....	136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6-8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38

【법 원】

○판결(광주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254
----------------------------	-----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6-113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76
○경기도고시제2016-118호(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277
○경상남도고시제2016-239호(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	287

【상 훈】

○서훈(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289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92
---------------------------	-----

반의 V-타이 배근 기술임.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강남이앤알(주), ②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852-0462, ② 02-782-5980

2. 명칭 :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가 공법화된 단일겹PLUS 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진동구조물(철골, RC)이나 경사면 등에 합성고분자계 단일겹PLUS 시트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용하여 우수 유입로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조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 방수기술들은 수직부에 시공된 방수시트 끝단부를 못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방수시트의 천공이 불가피하였으며, 시트 끝단부에 시공된 실링재는 외기환경의 영향(자외선 등)으로 장기적인 방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신청기술은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수직부에 대한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자동 열풍용착기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 고정방식으로 바탕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술이다.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단차 저감을 목적으로 한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방수안정성 개선을 위한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 방수시트 찢김 하자에 대응하기 위해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합성고분자계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22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등급의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금까지 도선사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도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선사면허를 1급부터 4급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도선이용자가 도선사의 도선 경력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1) 현행 규정에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없어서 도선사는 도선사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간 동안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관리하고 도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도선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